

2023년도 제26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3. 10. 24.(화요일), 10:30
- 장 소: 대면 심의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김민아(분과위원장), 김성주, 김정숙, 손수호, 한승원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3-258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김준근 주임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3,845건(안건번호 제2023-202315호~206159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3-202315호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프로그램 팝업 광고를 무력화하는 크랙을 게시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점, 처음 부의된 안건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전체 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함.

안건번호 제2023-202316호~202329호는 영상저작물의 자막파일을 제공중인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임이 명백한 점, 최신 영상저작물의 불법복제물 이용을 직접 촉진하여 합법시장을 곧바로 대체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점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안건번호 제2023-202330호~202332호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 PDF 파일을 판매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202333호~202354호는 웹하드, 블로그 및 카페에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가결함.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그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5,650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김민아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26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3-258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김민아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B 위원: 민원인이 신고한 내용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식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됨.
- C, D, E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김민아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민원 정보 및 저작물명과 관련한 부분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안전에 관한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쪽수를 기재하고 비공개로 결정함.

- A 위원: 심의대상 유형은 처음 심의에 올라오는 것인가?
- 김준근 주임: 그러함. 광고 차단 크랙 프로그램은 처음 올라 온 사안임.
- B 위원: ○○○에서 광고 없는 유료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 것을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도록 광고 차단 크랙 소프트웨어를 제공한 사안임. 이런 소프트웨어 제공 행위가 ○○○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 나 이런 것들의 저작권을 침해 했느냐 이 부분이 판단이 되어야 하는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음.
- A 위원: 심의대상 안건의 저작권 침해 여부가 확실하지 않는데 가결·부결을 결정할 수는 없음. 처음 심의에 올라온 사안이라면 전체위에 회부하여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볼 수 있음.
- E 위원: 애매한 부분이 있음. 만약 저작권자가 우리 광고 페이지가 침해받고 있으니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한다면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만, 저작권자가 아닌 자가 신고한 사안에 대해 어떤 근거로 침해하였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결정하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음.
- B 위원: 저작권법상 영리 목적으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하게 되면 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에서 제재하는 근거 조항이 있어, 심의대상 안건을 기술적 보호조치의 영역으로 평가 할 수 있다면 시정권고 할 수 있을 것임. 그런데 실제로 ○○○ 프로그램을 기술적으로 어떤 식으로 침해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
- 이숙형 부장: 다만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배포되면 저작권자에게 큰 피해

가 있을 것임.

- D 위원: 그러함. 차단벽을 세워 봤는데 그걸 무력화 시킨 것임.
- E 위원: ○○○가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인 광고 수익을 차단한 것으로 회사를 유지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저해 할 수 있음.
- D 위원: 이런 유형이 반복적으로 심의에 올라 올 수 있으므로 전체위원회에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김민아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3-202315호에 대해 전체위원회에 회부 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C, D, E 위원: 동의함. 회부 의견임.
- 김민아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202315호는 게시물에 대해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점, 처음 부의된 안전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전체 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함.
- 김준근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202316호~202329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블로그에서 최신 일본 애니메이션의 자막을 배포하고 있는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D 위원: 심의대상 블로그가 원저작자로 이용 허락을 받았을 수도 있지 않은가?
- 김준근 주임: 이용허락 관련 증거는 없음. 다만 해당 저작물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서비스 중이기 때문에 별도의 이용 허락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김민아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3-202316호~202329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C, D, E 위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김민아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202316호~202329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김준근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202330호~202332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을 판매중인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김민아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3-202330호~202332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C 위원: 심의 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

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 권고의 가결 의견임.

- B, D, E 위원: 저작권 침해 정보인 “불법복제물등”으로서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가결 의견임.
- 김민아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202330호~202332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김준근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202333호~202354호는 민원인들이 신고한 사안으로 웹하드, 네이버 블로그 및 카페에 게시된 불법복제물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김민아 분과위원장: 안전번호 제2023-202333호~202354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C 위원: 심의 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B, D, E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 권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가결 의견임.
- 김민아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202333호~202354호는 게시

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김준근 주임: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3-202355호~206159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S W, 방송, 출판/어문, 만화/웹툰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익스펜더블 4’)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3-202439호(‘익스펜더블 4’)는 2023.10.18. 개봉한 해외 영화로 웹하드에서 380포인트에 판매중임.
(‘똑똑똑’)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3-202551호(‘똑똑똑’)는 2023.03.08. 개봉한 해외 영화로 웹하드에서 370포인트에 판매중임.
(‘한강’)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3-204660호(‘한강’)는 2023.09.13.부터 방영중인 한국 드라마로 웹하드에서 440포인트에 배포중임.
- 김민아 분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3-202355호~206159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심의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김민아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제2023-202355호~206159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

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인건번호 제2023-202315호, 제2023-202316호~202329호, 제2023-202330호~202332호, 제2023-202333호~202354호는 가결하고 인건번호 제2023-202355호~206159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김민아 분과위원장이 제26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26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10. 31.

분과위원장 김민아

위원 김성주

위원 김정숙

위원 손수호

위원 한승원